

제311회 임시회  
2012. 6. 12.(화)

「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 
범위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

「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 
범위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박문희 의원의 6인

(박문희, 김재종, 김동환, 김영주, 노광기, 이광희, 장병학)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2년 6월 1일
- 회부일자 : 2012년 6월 12일

### 3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

### 4. 주요내용

-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“실·국·본부장, 담당관, 실·과·팀장급”을 “실·국·단·본부장, 담당관·과장급”으로 개정함. (안 제2조제2호)

#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한 「충청북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붙임 : 「충청북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보조기관중 실·국·본부장, 담당관, 실·과·팀장급”을 “보조기관 중 실·국·단·본부장, 담당관·과장급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2조(범위)</b>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,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2. <u>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·국·본부장, 담당관, 실·과·팀장급</u></p>	<p><b>제2조(범위)</b>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<u>보조기관 중 실·국·단·본부장, 담당관·과장급</u>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

제2조 (실장·국장·단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) 충청북도(이하“도”라 한다) 본청의 실장·국장·단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·출장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.